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고민정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85
----------	-------

발의연월일 : 2026. 3. 6.

발 의 자 : 고민정 · 박정현 · 임호선
김문수 · 김준혁 · 조인철
윤종균 · 진선미 · 문금주
박상혁 · 김동아 의원
(11인)

제안이유

우울증,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고 매년 수백 명의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되풀이되고 있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학생보다 훨씬 많은 학생이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해를 하는 것으로 밝혀짐. 이는 학생의 마음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심각한 사회 문제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함.

교육부에서 학생 마음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예방-발견-상담-치료의 체계를 마련했으나 고위기 학생 발견 공백, 상담 중심 지원, 정보연계 미흡 등 여러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한편 보건복지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자살예방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인과 학생의 차이를 고려한 학생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역시 높음.

학생의 마음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을 넘어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임. 따라서 국가의 특별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학생의 마음건강을 책임지고 관리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실태조사, 사회정서교육, 상담체계 표준화 근거, 조력인 제도 등을 담은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감에게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한 시책 마련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에게는 학교 교육환경을 마련하며, 보호자에게는 학생이 마음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할 수 있는 적절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체별 책무를 부여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다.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세부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 라. 학생의 마음건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 마.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자료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바.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 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상담실에서 학생 및 보호자를 상대로 상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학생상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및 제13조).
- 아.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전문기관으로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 및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을 설립하도록 함(안 제14조).
- 자. 교육감은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및 학교지원정신건강전문기관등을 설치 또는 지정하여 학교에서 정서행동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록 함(안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

차.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에 대한 전문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원 등에 대한 연수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카. 교육감은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수행 및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기관 또는 교원 등에게 상훈 및 근무성적 평정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

타.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및 제25조).

파. 중앙진홍원, 지역진홍원, 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또는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및 제27조).

학생 마음건강증진 및 정서행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전인적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음건강”이란 학생이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를 넘어 감정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심리적·정서적 상태를 말한다.
2. “정서행동문제”란 학생이 감정 또는 행동 조절의 이상·곤란으로 인하여 학습, 인간 관계 형성, 사회 적응 등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정서역량”이란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인식·조절하고 타인과 원활히 소통·관계하며 공동의 목표를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이에 준하는 학교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를 포함한다)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

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교육·상담 등 분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 교육과 관련된 분야별 정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학생의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책무를 진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하여 이를 통합 지원하는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지역의 여건에 맞는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수립·추진할 때 학생의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의 장 등의 책무) ① 학교의 장 등은 학생이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및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수업 및 학사(學事)에 관한 결정을 할 때 학생의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역 내 전문기관 또는 보호자 등과 연계하여 적절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자의 책무) ① 보호자는 학생이 마음건강을 유지하고 건강한 인격을 형성하며 성장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과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교의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학생의 사회정서역량 함양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 등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8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교육감과 협의를 거쳐 학생 마음건강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책 추진체계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교육감 및 학부모 등 주체별 역할
2. 관계 법령 제정·개정 등 제도 개선 사항
3. 교육·상담 등 분야별 전문인력 확보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자원 확보 및 관련 인프라 구축·활용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

한 사항

- ③ 교육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공포하고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제9조에 따른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매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제4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및 그 밖에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및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 ①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학생마음건강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복지·건강·상담 등 유사한 성격을 심의하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대한 분석·평가

2. 제14조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3. 제15조에 따른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4. 제16조에 따른 학생회복지원기관의 설치 또는 지정
 5. 제17조에 따른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의 설치 또는 지정
 6. 제18조에 따른 지정취소
 7. 그 밖에 위원장이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하다고 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10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에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 등을 위하여 학생 마음건강 관련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학교 및 그 밖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그 밖에 실태조사의 시기, 방법, 내용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정서역량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자에 대한 교육은 교육자료를 제공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2조(학생 정서행동문제 발견)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학생생활지도
2. 「학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강검사
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른 학교폭력 조사·상담 등
4.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학부모 상담
5. 제13조에 따른 학교 상담
6.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를 발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

제13조(학교 상담) ① 학교의 장 및 교원은 학생의 마음건강을 증진하고 정서행동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 상담실에서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상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②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결과 해당 학생에게 정서행동문제 등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상담 학생의 고유식별정보, 상담일시, 상담목적, 주

호소문제, 상담내용, 특이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담정보(이하 “학생상담정보”라 한다)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④ 교육부장관은 학생상담정보의 체계적인 기록·관리 및 타 기관 상담정보와의 연계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⑤ 학교의 장은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학생상담정보를 기록·관리·연계하려는 경우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그 밖에 학생상담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방식, 제5항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의 동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학생마음건강진흥원) ① 교육부장관은 학생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중앙학생마음건강진흥원(이하 “중앙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 지원
2.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분석, 연구 등을 통한 정책 수립 지원
3. 제13조에 따른 학생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교 상담 활동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4. 제3항에 따른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의 운영 지원
5. 관련 정책 및 사업 홍보 등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

6. 그 밖에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업무

② 국가는 중앙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중앙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 확산을 지원하고 지역 학생의 마음건강 증진 및 정서행동문제 해결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지역학생마음건강진흥원(이하 “지역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지역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중앙진흥원 및 지역진흥원의 설립 또는 지정,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 학생마음건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지원청에 설치할 수 없거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교육지원청 이외의 장소에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을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13조에 따른 학교 상담 활동 개선을 위한 교직원 연수 및 학교 컨설팅 등 상담 활동 지원

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이하 “지역 유관기관”이라 한다)과의 정보공유 및 협력

3. 병원·의원 및 지역 유관기관과 학교 간 연계 지원

4. 그 밖에 지역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등 필요한 사항으로 교육감이 정하는 업무

② 교육감은 지역 여건과 학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청별 지원센터의 수 및 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명칭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학생회복지원기관) ① 교육감은 마음건강 회복 또는 정서행동 문제 해결이 필요한 학생을 위한 교육·상담·치료·전문기관 연계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기관(이하 “학생회복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

② 학교의 장은 마음건강 및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위하여 학생회복지원기관에 위탁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학생회복지원기관의 종류, 기능, 설치 또는 지정, 운영, 교육 위탁, 출석 인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정서 행동문제를 겪고 있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설치 또는 지정하거나 전문가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이하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정서행동문제를 겪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상담·치료 및 지역 의료기관 연계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은 제2항에 따라 지원한 학생의 경과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추가적인 학생 지원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의 설치 또는 지정,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지정취소 등) ① 교육감은 지역진흥원, 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및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3. 업무 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지정취소의 기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9조(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 ① 교육감은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 등을 위하여 상담, 조언, 보호, 회복 활동 및 기관 연계 등을 지원하는 조력인(이하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 지정·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생 정서행동지원조력인의 역할, 자격, 지정 절차, 연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교원의 연수지원 등)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1조에 따른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등 이 법에 따른 학생 지원에 대한 교원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고등교육법」 제41조에 따른 교육대학·사범대학(교육과 및 교직과정을 포함한다)과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교원 양성기관은 예비교원의 학생 마음건강 지원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과목을 개설하고 이를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 방법, 인정기

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상훈 등) ① 교육감은 사회정서역량 함양 교육 수행 및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해결 등에 기여한 바가 큰 학교, 기관 또는 교원 등에게 상훈을 수여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지원센터에 소속된 교원 등의 근무성적 평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훈의 대상, 기준, 평가방법 및 가산점 부여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중앙진흥원, 지역진흥원, 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또는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이 아닌 자는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3조(비밀 유지의 의무) 이 법에 따라 정서행동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5조(벌칙) 제23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비밀을 누설하거나 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양벌규정) 법인·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7조(과태료) ① 제22조를 위반하여 중앙진흥원, 지역진흥원, 지원센터, 학생회복지원기관 또는 학교지원 정신건강전문기관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